

# 대법원

## 제 1 부

### 판결

사건 2025다216025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성우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9. 선고 2024나2034079 판결

판결선고 2025. 12. 11.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 1. 관련 법리

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호),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면서 사실상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처럼 업무를 집행하는 자는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준수의무를 비롯하여 이사와 동일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그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37071 판결 등 참조).

나.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같은 항 각 호의 자를 이사로 본다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기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등 참조).

## 2.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주식회사인 원고의 '본부장, 부사장, 수석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원고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원고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공모하여 이 사건 제1, 2 송금에 관여하였으므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의제되는 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의제되는 자,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요건, 서증의 진정성립,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배상책임의 제한 및 소멸시효 완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마용주